

2017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 공모안내

국민들의 문화활동이 향유를 넘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문화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호회를 비롯한 지역의 크고 작은 생활문화 커뮤니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문화체육관광부와 생활문화진흥원은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생활문화동호회들이 참여하는 공연, 전시 등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지역 동호회 간 교류할 수 있는 생활문화 프로그램 및 축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일상 속 문화 체감도를 높이고,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독려하여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상이 행복해지는 문화 활동, 2017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 공모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공모개요>

- 공모대상 사업
 - 우리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
 -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 사업별 공모개요

구분	우리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 지원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지원
공모기간	2017년 2월 1일(수)~2월 20일(월)	
사업기간	2017년 3월~8월(6개월)/사업기간 내 3개월 이상 자율운영	
공모대상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지역문화재단	
지원내용	마을권 생활문화동호회 발표 및 교류 지원	지역 간·장르 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지원
지원규모	9백만원 내외/45개 내외	20백만원 내외/18개 내외
	총 760백만원 내 선정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재)생활문화진흥원
- 관련문의 : (재)생활문화진흥원 기획운영팀 허성희(02-2623-3105)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소개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생활문화동호회의 참여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생활 속 문화체감 확산과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의 주체적 활동의 장을 지원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문화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시키고, 순환적인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생활권 참여

우리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

- 공연, 전시 등 동호회 발표
- 마을 생활문화동호회 축제
- 동호회 교류 프로그램



<2016 우리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
-메리고라운드 아트마켓>

문화체감 확산 및 문화공동체 형성

권역별 교류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 장르 중심 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간 교류 축제
- 지역 소개 동호회 창작 및 발표



<2016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인천 시민문화예술 축제
'끼가뻘쩍 시민축제'>

지역문화 역량 강화 및 문화격차 해소

전국적 확산

전국생활문화축제

- 지역별 동호회 공연, 전시
- 동호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 동호회 네트워킹 프로그램



<2016 전국생활문화제>

생활문화 활동 전국적 확산 및 동기부여

문화로 행복한 삶 실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생활문화동호인들의 일상적 문화예술 참여를 위한 우리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 지원⇒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와 생활문화 네트워크 형성 기반 마련을 위한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지원⇒전국의 우수한 생활문화 사례를 공유하고 전국적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전국생활문화 축제 개최의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우리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 지원

○ 사업목적

- 마을권 생활문화동호회 참여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의 장 마련을 통한 신규 동호회 발굴 및 동호회 간 교류 지원
- 생활문화동호회의 직접적 참여도 제고를 통한 문화 참여의 자발성·자율성 향상 및 지역 문화역량 강화
- 지속적인 동호회 교류 활동 기반 마련을 통한 생활문화 매개 마을 문화공동체 형성

○ 공모개요

- 사업명 : 2017 ‘문화가 있는 날’ 우리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 공모기간 : 2017년 2월 1일(수)~2월 20일(월)
- 공모대상 :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지역문화재단
- 지원규모 : 1개 프로그램 당 9백만원 내외/45개 내외(총 400백만원 내)

○ 지원 세부내용

- 프로그램 운영기간 : 2017년 3월~8월(6개월)
- 생활권 내에서 생활문화동호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축제(발표회, 공연, 전시, 생활문화 체험 등) 지원
 - ※ 타 지역 축제 연계 개최 불가(부대 프로그램 등) 불가
- 마을 생활문화동호회 발굴, 생활문화동호회 발표 및 교류 프로그램 기획·운영, 참여자 역량 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홍보 등
- 프로그램 주제 선정 등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동호회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 동호회 간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 기반 마련이 되는 프로그램 우선 지원
- 음악, 무용, 미술 등 활성화 된 장르와 더불어 문학, 만화, 요리 등 비활성화된

장르 동호회 발굴 및 참여 권장

- 지역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시기 및 회차 계획
 - 운영기간 내 최소 3개월 이상 자율 운영
- [붙임 1]의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예산편성 지침> 참고하여 예산 계획 수립

○ 지원 대상 및 자격

-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지역문화재단
 - ※ 지자체 직영 시설의 경우 별도 주관단체 선정하여 신청. 선정사유 기재한 지자체 추천서 및 주관단체 소개서[별첨 1] 필수 제출
 - ※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공모 마감일(~2.20) 기준 기 개관한 센터만 신청 가능
 - ※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의 경우 1개의 아마추어 문화예술동호회가 아니라 최소 10개 이상의 동호회가 모인 연합단체만 신청 가능(동호회명, 활동 장르, 회원수, 대표자명 등을 기재한 연합단체 소속 동호회 현황 제출 필수)
 - ※ 공모 마감일(~2.20) 기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 보유한 단체만 신청 가능
 - ※ 해당 프로그램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규모

- 1개 프로그램 당 9백만원 내외 지원/45개 내외 선정(총 400백만원 내)
- 프로그램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심사를 통해 차등지원

○ 선정기준

심사기준		배점
1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20점
2	지역 생활문화프로그램 추진 여건	10점
3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4	생활문화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30점
5	생활문화동호회의 프로그램 참여 비중	10점
6	지역 '문화가 있는 날' 및 생활문화 지역 확산 기여도	10점
합계		100점

○ 심사 및 추진일정

- 심사 절차 : 사업신청서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

- 추진일정

구분	일정	내 용
사업공고	2월 1일(수)	- 사업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	~2월 20일(월) 17:00	- 사업신청서 접수(이메일 제출)
↓		
서류심사	2월 3주	- 사업신청서 심사
↓		
심사결과 공지	2월 3주	- 서류심사 선정 단체 심사결과 공지 * 우리 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안내
↓		
교부신청서 접수	~2월 4주	- 사업계획 보완 및 확정 * 교부신청서 제출(이메일 제출)
↓		
지원금 교부	~3월 1주	- 지원금 교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2월 1일(수) ~ 2월 20일(월) 17:00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hsh3639@nccf.or.kr)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공문(자체양식)
 - ② 지원 신청서 [별첨 1]
 -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유의사항

- 선정단체는 '17년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등 사업운영 시 이용 필수
- 선정단체 대상 워크숍(3월), 결과공유회(10월) 등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필수 참여
 - ※ 선정 후 세부내용 안내 예정

2.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지원

○ 사업목적

- 생활문화 관련 다양한 참여주체 간 협력 추진으로 지역 거점 생활문화시설 중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기반 마련
- 지역 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의 장 마련

○ 공모개요

- 사업명 : 2017 ‘문화가 있는 날’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지원 사업
- 공모기간 : 2017년 2월 1일(수)~2월 20일(월)
- 공모대상 :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지역문화재단
- 지원규모 : 1개 프로젝트 당 최대 20백만원 내외/18개 내외(총 360백만원 내)

○ 지원 세부내용

- 프로젝트 운영기간 : 2017년 3월~8월(6개월)
- 지역 내/지역 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지원
 - 음악, 무용, 미술 등 동호회 장르 중심 교류 프로그램
 - 지역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간 권역 단위 교류 프로그램
 - 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 참여주체(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 기획 단체 등) 협력 추진 체계 구축, 교류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참여자 역량 강화 워크숍, 프로젝트 홍보 등
-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시설, 지역문화재단 등 다양한 주체 협력 추진 권장
- 동호회 간 교류에 기반한 지역 소재 창작을 내용으로 할 경우 가산점 부여
예시) 권역 내 다수의 동호회가 지역의 문화, 역사, 특산품 등을 소재로 공동 창작을 하는 프로젝트
⇒ 평창 올림픽, 금산 인삼, 강릉 허난설헌 등을 을 소재로 한 지역 동호회 간 교류 및 창작 프로젝트
- 프로젝트 주관단체 거점 지역 기준 타 지역 교류 시 가산점 부여
예시) 주관단체 : 경북 상주시 상주생활문화센터
 - 교류·협력기간단체 : 경북 포항시 기계문화의집, 경남 함양군 함양문화원 등
- 지역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프로젝트 운영 시기 및 회차 계획

- 운영기간 내 최소 3개월 이상 자율 운영
- [붙임 1]의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예산편성 지침> 참고하여 예산 계획 수립

○ 지원 대상 및 자격

-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지역문화재단
 - ※ 지자체 직영 시설의 경우 별도 주관단체 선정하여 신청. 선정사유 기재한 지자체 추천서 및 주관단체 소개서[별첨 2] 필수 제출
 - ※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공모 마감일(~2.20) 기준 기 개관한 센터만 신청 가능
 - ※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의 경우 1개의 아마추어 문화예술동호회가 아니라 최소 10개 이상의 동호회가 모인 연합단체만 신청 가능(동호회명, 활동 장르, 회원수, 대표자명 등을 기재한 연합단체 소속 동호회 현황 제출 필수)
 - ※ 공모 마감일(~2.20) 기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 보유한 단체만 신청 가능
 - ※ 해당 프로그램 중복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개 프로젝트 당 최대 20백만원 내외/18개 내외(총 360백만원 내)
- 프로젝트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심사를 통해 차등지원

○ 선정기준

심사기준		배점
1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15점
2	주관단체의 생활문화 사업 추진역량	10점
3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4	교류 프로그램 구성의 참신성 및 차별성	25점
5	참여 주체 다양화 및 협의체계의 구체성	20점
6	‘문화가 있는 날’ 및 생활문화 교류 활성화 기여도	10점
합계		100점
가산점	지역특성을 소재로 한 동호회 창작 프로그램	5점
	지역 간 교류 시	5점

○ 심사 및 추진일정

- 심사 절차 : 사업신청서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
- 추진일정

구분	일정	내 용
사업공고	2월 1일(수)	- 사업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	~2월 20일(월) 17:00	- 사업신청서 접수(이메일 제출)
↓		
서류심사	2월 3주	- 사업신청서 심사
↓		
심사결과 공지	2월 4주	- 최종 선정 단체 심사결과 공지 * 우리 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안내
↓		
교부신청서 접수	~3월 2주	- 사업계획 보완 및 확정 * 교부신청서 제출(이메일 제출)
↓		
지원금 교부	~3월 3주	- 지원금 교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2월 1일(수) ~ 2월 20일(월) 17:00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hsh3639@nccf.or.kr)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공문(자체양식)
 - ② 지원 신청서 [별첨 2]
 -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유의사항

- 선정단체는 '17년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등 사업운영 시 이용 필수
- 선정단체 대상 워크숍(3월), 결과공유회(10월) 등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필수 참여
- ※ 선정 후 세부내용 안내 예정

붙임 1.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 예산편성 지침

<예산 편성 시 참고사항>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 운영비 항목만 편성이 가능하며, 단체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편성 불가, 상근 인력 사례비 편성 불가
- 제시된 비목/세목 외 타 항목 편성 불가
- 강사비 및 전문가 활용비는 전체예산의 15% 이내 편성 가능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내용 및 기준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진행, 사업 정산 보조 등 보조인력 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8시간) 최대 60,000원/1인 기준 - 사업기간 내 30일 이내 활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강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사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이내/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이내 - 1일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특강 강사비와 중복 지급 불가 - 재료비 및 경비 함께 지급 불가(별도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강 강사 사례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사례비(한도)</th> </tr> </thead> <tbody> <tr> <td>A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td> <td>300,000원/1일 (1회 2시간 기준)</td> </tr> <tr> <td>B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기능대) 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정부 출연기관(연구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재단법인 재직자 · 개인기관의 장(원장, 소장) ·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 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 </td> <td>200,000원/1일 (1회 2시간 기준)</td> </tr> <tr> <td>C급</td> <td>· A, B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td> <td>100,000원/1일 (1회 2시간 기준)</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A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300,000원/1일 (1회 2시간 기준)	B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기능대) 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정부 출연기관(연구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재단법인 재직자 · 개인기관의 장(원장, 소장) ·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 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 	200,000원/1일 (1회 2시간 기준)	C급	· A, B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	100,000원/1일 (1회 2시간 기준)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A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300,000원/1일 (1회 2시간 기준)										
B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기능대) 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정부 출연기관(연구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재단법인 재직자 · 개인기관의 장(원장, 소장) ·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 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 	200,000원/1일 (1회 2시간 기준)													
C급	· A, B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	100,000원/1일 (1회 2시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시간 초과 시 1시간 당 5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 - 1일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위 강의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강사의 거주지와 강의 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비 기준) 															
전문가 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행사 사례비(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사례비(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발표자</td> <td>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400,000원/1일 (1회 3시간 기준)</td> </tr> <tr> <td>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300,000원/1일 (1회 3시간 기준)</td> </tr> <tr> <td>사회자</td> <td>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300,000원/1일 (1회 3시간 기준)</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발표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400,000원/1일 (1회 3시간 기준)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1일 (1회 3시간 기준)	사회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1일 (1회 3시간 기준)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발표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400,000원/1일 (1회 3시간 기준)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1일 (1회 3시간 기준)													
사회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1일 (1회 3시간 기준)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내용 및 기준																									
		<table border="1"> <tr> <td></td> <td>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200,000원/1일 (1회 3시간 기준)</td> </tr> <tr> <td rowspan="2">토론자</td> <td>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200,000원/1일 (1회 3시간 기준)</td> </tr> <tr> <td>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150,000원/1일 (1회 3시간 기준)</td> </tr> </table> <p>- 3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만원씩 지급 가능 - 위 강의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강사의 거주지와 강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비 기준)</p> <p>○ 회의 참석 사례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사례비(한도)</th> </tr> </thead> <tbody> <tr> <td>회의 참석 수당</td> <td>· 자문회의 · 좌담회 · 추진위원회의 등</td> <td>100,000원/1일 (1회 2시간 기준)</td> </tr> </tbody> </table> <p>- 2시간 초과 시 초과회의비(5만원) 지급 (1일 총 15만원)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비 기준)</p> <p>○ 행사 진행 사례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사례비(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행사 사례비</td> <td>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300,000원/1일</td> </tr> <tr> <td>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200,000원/1일</td> </tr> <tr> <td>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100,000원/1일</td> </tr> </tbody> </table> <p>-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비 기준)</p>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1일 (1회 3시간 기준)	토론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1일 (1회 3시간 기준)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50,000원/1일 (1회 3시간 기준)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회의 참석 수당	· 자문회의 · 좌담회 · 추진위원회의 등	100,000원/1일 (1회 2시간 기준)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행사 사례비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1일	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1일	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00,000원/1일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1일 (1회 3시간 기준)																									
토론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1일 (1회 3시간 기준)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50,000원/1일 (1회 3시간 기준)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회의 참석 수당	· 자문회의 · 좌담회 · 추진위원회의 등	100,000원/1일 (1회 2시간 기준)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행사 사례비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1일																									
	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1일																									
	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00,000원/1일																									
	동호회 활동비	<p>○ 생활문화동호회 참가활동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활동비(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참가 활동비</td> <td>참여 동호인 10명 이하</td> <td>150,000원/1회</td> </tr> <tr> <td>참여 동호인 11명~20명</td> <td>200,000원/1회</td> </tr> <tr> <td>참여 동호인 21명~30명</td> <td>250,000원/1회</td> </tr> <tr> <td>참여 동호인 31명 이상</td> <td>300,000원/1회</td> </tr> </tbody> </table> <p>- 연습 등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등 경비 지원 - 동호회 대표 등 회원 중 1명에게 일괄 지급</p>	구분	기준	활동비(한도)	참가 활동비	참여 동호인 10명 이하	150,000원/1회	참여 동호인 11명~20명	200,000원/1회	참여 동호인 21명~30명	250,000원/1회	참여 동호인 31명 이상	300,000원/1회													
구분	기준	활동비(한도)																									
참가 활동비	참여 동호인 10명 이하	150,000원/1회																									
	참여 동호인 11명~20명	200,000원/1회																									
	참여 동호인 21명~30명	250,000원/1회																									
	참여 동호인 31명 이상	300,000원/1회																									
	회의비	<p>○ 참여인력 회의 및 워크숍, 발표회, 행사 등에 대한 다과비 - 기준 : 5,000원/ 1인 1회 - 개별 동호회 연습 시 다과 및 식사비 등 지원 불가(참가활동비에 포함)</p>																									
	기타	<p>○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X밴 드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등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비소모품은 구입 불가) ○ 행사/여행자 보험료</p>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내용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필수 책정 - 사업비 3천만원 미만의 경우 2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민간보조금 정산 관련 회계검사 지정법인에서만 실시(선정 후 안내 예정) ○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등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임차료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발표회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장소 임차료 ○ 음향, 조명, 전기 등 시스템 및 차량 임차료 등 			
여비 (220)	국내 여비 (01)	○ 사업 관련 출장경비			
		구분	내역	지급방법	지급액(한도)
		관내	여비	정액	- 4시간 미만 : 10,000원/1일 - 4시간 이상 : 20,000원/1일
		관외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고속버스, KTX등)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해당 구간 대중교통 운임비 지급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 70,000원/1박 - 광역시 : 60,000원/1박 - 그 외 : 50,000원/1박
			식비	정액	- 20,000원/1일
일비	정액		- 20,000원/1일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인력 회의 및 워크숍, 발표회, 행사 등에 대한 간담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10,000원/ 1인 1회 - 개별 동호회 연습 시 식사비 등 지원 불가(참가활동비에 포함) 			

붙임 2. 공모요강 FAQ

신청자격

◆ 생활문화동호회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1개의 생활문화동호회는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생활문화동호회 10개 이상이 모인 동호회 연합단체는 신청할 수 있으며, 연합단체 명의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개별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러 동호회가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고 교류함으로써 생활문화 활동을 보다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 장르, 배경의 동호회와 만나 문화 역량을 강화시키고 네트워킹의 기반을 마련하여 동호회의 지속적인 동호회 활동 동력을 만들고 생활문화 중심 마을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자체 관할 공공기관은 신청할 수 없나요?

- 지자체장이 대표로 있는 기관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지자체 관할 공공기관 중 기관 대표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고, 독립된 사업자와 계좌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대상 중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는 지자체가 별도의 사업 운영 주체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지자체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타 기관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에 어떤 사항을 지원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본 사업의 지원 여부는 심사를 통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 만약, 사업 추진과정에서 동일한 항목에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사업 신청 및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사업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내용

◆ 참여 동호회의 활동 장르 제한이 있나요?

- 음악, 무용, 회화, 공예, 사진 등 문화예술 분야의 동호회를 중심으로 지원하나 신규 동호회 발굴 및 프로그램 다양화, 교류 촉진 차원에서 일부 요리, 봉사, 교육 동호회 등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우리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과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우리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은 생활권 단위의 동호회 발표 및 교류의 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막 동호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마을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동호회에 발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산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 간에 네트워킹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동호회가 활성화가 된 마을에서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동호회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문화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속적인 네트워킹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는 지역과 지역, 장르와 장르 등 권역 내 또는 권역 간의 생활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로 지역 간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마을과 마을이 교류할 수도 있고, 한 권역 내에서 난타, 오카리나 등 한 장르를 중심으로

동호회가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17년에는 동호회 간 교류를 기반으로 생활문화 창작 활동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정된 프로그램 운영 일시, 장소, 횟수 등이 있나요?

- 정해진 사업기간 안에 지역 추진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일시, 장소, 횟수 등을 직접 기획하시면 됩니다.
- 다만 동호회 활동 결과물을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어 생활문화 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에서 운영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참여 동호회를 특정한 계층(아동, 노인 등) 또는 특정 장르로 설정해서 진행해도 되나요?

- 아동 및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타 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의 지원 필요성은 낮습니다.
- 특정 장르로 설정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지역 추진 여건이 고려되었고, 프로그램 목표 및 주제가 명확하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전문예술인 또는 예술단체가 참여해도 되나요?

-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예술인 및 단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사업의 주목적은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로 프로그램에서 전문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는 동호회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고 동호회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매개 역할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사업에서 요구하는 의무적인 성과 목표(인원수 등)가 있나요?

- 참여인원, 프로그램 운영횟수 등에 대한 의무적인 목표는 없습니다.
- 사업에 최종 선정된 단체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목표를 설정 및 제시하여 운영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단체 자체 평가를 통해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한 단체에서 우리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 지역의 추진여건, 사업목적,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시어 보다 적합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예산활용

◆ 생활문화동호회 사례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동호회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발표회, 축제 등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사례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단, 연습 등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교통비, 식사비 등 경비를 지원합니다.

◆ 생활문화동호회에 악기, 의상, 미술재료 등을 지원해도 되나요?

- 개별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악기, 의상, 미술재료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 단,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의상, 악기 등은 임차할 수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공예, 캘리그래피 등 생활문화 체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료 구매가 가능합니다.

◆ 자부담은 필수인가요?

- 자부담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심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만약 자부담을 추가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려는 경우 전체 예산의 30%이내에서만 가능하며 본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정산 시 정산내역에 자부담도 포함됩니다.